(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영문명)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홈페이지) http://www.reitpi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전 화) (02) 528-4477

대 표 이 사 : 박성표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이사 (전무)
(성 명) 이인규 (전 화) (02) 528-0405

작 성 자 : (직 책) 경영관리팀장
(성 명) 조호연 (전 화) (02) 528-0458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1호)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사업목적 추가		정관 제3조(목적) 기존 : 제1호 내지 제12호 변경 : 제1호 내지 제17호 ※ 세부내용 : 아래 변경 전·후 참조
-사업목적 삭제		해당사항 없음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기재 공간 협소에 아래 따른 별도 기재
	변경후	
2. 변경 주요이유		업무 범위 명확화, 업무영역 확장 대비
3. 사업 추진일정		미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이사회 2017.05.15.(임시주총 2017.05.16.)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3(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전원 참석)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17.05.1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이유
제3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나.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라. 대지조성사업 마.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에 부동산 관련권리의 신탁 3. 동산의 신탁 4. 담보부사채신탁업	**제3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호 내지 9호 <현행과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이유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사무 나. 재산의 취득, 관리, 개발,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다.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라. 채무의 이행 및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마. 유언의 집행 및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대리사무 바.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 7. 기타 신탁업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무 가.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나. 부동산 정보자료의 조사연구 및 판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과 관련된 업무 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10.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및 대행 업무 11.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및 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13.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 14.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1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식재산권의 관리, 라이센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정비사업 시행업무 등 당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 업무영역 확장 대비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출자 및	16. 제1호 내지 제15호에 따른 출자 및	호 추가에

변경 전	변경 후	이유
투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투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따른 변경(15호 및 16호)

<기재상의 주의>

주1) 사업목적 변경은 회사가 영업의 한 내용으로서 계속하여 영위할 사업내용에 변경(추가, 삭제 포함)이 있고, 이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사업 추진일정”은 변경(추가, 삭제)된 사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허가(등록)여부 및 인허가(등록)신청예정일, 자금조달, 사업계획 등 사업목적 변경내용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3) 상기사항 외의 계열회사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4)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